

## 교육비와 교육급여, 무엇이 다른가요?



###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

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 
(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)

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  
(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~64% 이하)

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으며(교육정보화 제외),  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!

###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

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. 따라서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 
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'소득인정액'이 더 높아 선정될 가능성이  
낮아집니다.

교육급여 계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상이어서 교육급여는 지원 받지 못하지만, 교육비  
계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여서 교육비는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#### '중위소득'이란?

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 
'16년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입니다. 따라서 중위소득 50%는 중위소득의 절반인 4인  
가구 기준 219만원입니다.

#### '16년 기준 중위소득

중위소득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50%	138	178	219	260	300	341
52%	144	187	229	271	313	356
60%	166	215	264	313	361	410

#### '소득인정액'이란?

가구원(학생 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 등)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 
도출한 값입니다

####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① + 재산의 소득환산액②

① : 가구의 근로, 사업, 재산, 연금 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합산

② : (각종재산 - 기본공제액 - 부채) x 월 소득환산율

※ 재산 : 토지, 주택, 전월세보증금, 예금, 주식, 보험, 승용차 등

## 지원기준

### 교육급여
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

### 교육비

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(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)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로,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
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
- 법정 차상위 대상자

#### 구 분 내 용

-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1) 차상위 자활 대상자      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  |
| (2)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|
| (3)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  |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(아동) 수당을 받는 자   |
| (4)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  |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       |
| (5)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|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     |
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"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"에 해당
- 학교장 추천 : 가정형편 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예외적으로 별도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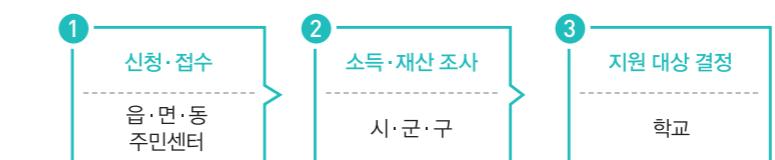
###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

자격 구분	보유 자격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	교육정보화지원		학교납부액감면		
					PC	인터넷 (유해차단 SW)	고교 교과서	체험 학습비 등	교복비
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	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	교육	교육	의료	의료	교육	교육	교복	
	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법정 차상위 대상자	○	○	○		○	○	○	○
증정소득 환산 기준 이하	64% 이하	52% 이하	60% 이하		40% 이하	60% 이하	60% 이하	60% 이하	
학교장 추천	○	○	○			○	○	○	
난민인정자	○	○	○		○	○			

-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, 시·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.

##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

### 선정절차



\* 교육비만 단독 신청 시 온라인 신청 가능

### 지원내용

#### ◆ 교육급여

구분	부교재비	학용품비	교과서대	입학금/수업료
초등학생	39,200원	—	—	
중학생	39,200원	53,300원		
고등학생	—	53,300원	131,300원	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
지원 횟수	연1회	26,650원씩 연2회	연1회	입학금 : 신입생 수업료 : 분기별
지원 방식		교육청이 수급자 계좌로 지급		학교 납부액 감면

#### 여러 부처에서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혜택(예시)

이동전화 통화료 감면(미래창조과학부), 초·중학생 우유급식지원(농림축산식품부), 문화누리카드 발급(문화체육관광부), 정부 양곡 할인(보건복지부) 등

### ◆ 교육비

구분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	교육정보화 지원		고교 교과서	체험 학습비	교복비
				PC	인터넷 (유해차단 SW)			
초등학생	—							
중학생	—							
고등학생		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*	학기중 종식비 전액 (무상급식 학교 제외)	연 60만원	컴퓨터 1대	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월 19,200원	고교 교과서 실비 1인당 10만원 상한 실비	1인당 20만원 상한 실비
지원방식			학교 납부액 감면		직접 설치	통신사	학교 납부액 감면	

\* 교육급여로 입학금/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.

\* 학년 별로 지원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# [참고]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절차



★ 교육비 원클릭 신청(oneclick.moe.go.kr)

★ 복지로 온라인 신청(online.bokjiro.go.kr)

준비사항 : 공인인증서, 가구의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, 전월세 계약서 스캔 또는 촬영파일 등

#### 교육비 원클릭 신청

공인인증 및 개인 정보활용 동의
메인화면

상단 오른쪽 '온라인 신청 하기' 메뉴를 클릭
개인정보활용과 고유 식별 정보수집에 동의 한 후, 공인인증서로 로그인

#### 서비스 선택

-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(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)를 선택(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접속한 경우 생략)

####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

- 신청 대상 정보,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, 제출서류를 확인

####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

- 가구원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 등을 등록함
- 자녀사항을 등록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나타남(자녀등록시 학교선택은 필수)

#### 가족정보제공 동의

-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(금융/신용/보험정보) 제공에 동의
- 신청인은 본인과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동의
- 만 19세 이상 가족은 본 학년에서 가족정보제공을 동의할 경우만 계속 신청이 가능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)

#### 소득 / 재산 신고

- 가구원의 소득, 재산, 부채사항을 작성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)
- 소득 재산 신고 증빙자료 (전·월세 계약서 스캔파일 등) 업로드

####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

- 교육정보화 지원(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) 신청서를 작성

#### 신청하기

-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(이후부터는 신청서 수정이 불가합니다.)

#### 신청완료

-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(제출완료 후 안내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